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9호
2022년 1월

전문가 기고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주요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ESG 동향

EU Taxonomy 기후 위임법률 승인

K-ESG 가이드라인 특징 및 주요내용

주요 통계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송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준원

기업경영을 둘러싼 주변환경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생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SG 경영이란 기업에게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중점을 둔 경영을 하라는 사회적 요청이다. 그동안 기업의 평가기준이 이윤창출이라는 재무지표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기업경영에 ESG를 실천하는 비재무적인 사회적책임투자(SRI) 또는 지속가능투자 지표가 기업평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요약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산업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국제금융기관이나 펀드, 우리나라 연기금이 투자를 ESG 경영 기업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ESG 경영 정보공시를 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이나 펀드, 연기금 등의 투자여부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고 대기업은 스스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고 협력업체들에게도 ESG 경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SG에 대한 글로벌 평가지표에는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가 있는데 1999년부터 전세계 2,500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또한 주식포트폴리오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글로벌

별 주가지수 산술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에서 MSCI ESG Ratings은 35개 평가항목 이슈의 사회적 책임 인적자본에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있고 이 밖에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Reporting, 에코바디스(EcoVadis) 평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ESG 스코어 등 글로벌 ESG 평가지표가 있다. 국내 ESG 평가지표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항목에도 직장내 안전보건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서스틴베스트(Sustainvest) ESG 평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ESG 평가지표 등에도 안전보건 평가항목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ESG 요소의 사회적 책임에 산업안전 항목을 반영하여 ESG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기금의 ESG관련 기업에 대한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는 2024년에 전체 기금의 절반 정도인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에는 ESG의 개념과 주요 동향, ESG 진단 및 평가 항목, 공시지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의 ESG 진단항목 중 사회(S)의 산업안전분야는 안전보건추진체계(S-4-1)와 산업재해율(S-4-2)로 구분하고 있다. 안전보건추진체계는 조직이 산업인력 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근로자 건강 복지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내외 규격(ISO 45001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KOSHA-MS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

준으로 기업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평가 및 개선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또 하나의 평가항목이 산업재해율이다. 산업재해율은 조직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업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산업재해율 추이와 산업평균을 비교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인 성과점검항목은 기업의 지난 5개년간 산업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년간의 산업재해율이 5개년 평균 미만인지를 측정하게 된다.

금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SG 경영 평가항목에서 강조하는 경영자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의 구축과 산업재해율의 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확보의무와도 유사하다. 이제 기업들도 ESG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성실한 의무이행으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고객,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리플릿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리플릿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리플릿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이경인 선임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련 의무사항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월 27일부터는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인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처벌내용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1.27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4.1.27 *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제외	

※ 자료 : 고용노동부

②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중대 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도입하고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률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산재발생시 조치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주식회사 등에 대해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수, 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등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평가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해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시의 조치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발생 원인·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벌칙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건설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 평가의 실시(제36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조치, 기록·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조치(제38조, 제39조) -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재발생시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발생 시(제54조) - 해당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 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제57조) -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강은일 객원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참고용으로만 여겨졌던 ESG가 핵심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SG 경영의 확산과 함께 금융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지속가능 투자 동향

금융산업에서의 ESG 열풍은 금융의 본질과 관련이 깊다. 금융은 실물경제 부문에서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 중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특정 활동을 유도하는 일종의 규제이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졌고, 이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금의 흐름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투자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에서 ESG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지속가능 투자 전략의 유형으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 ESG 통합(ESG integration), 지속가능 테마 투자(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등이 대표적이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금융회사들이 소극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지속가능 투자 전략이다. 배제(exclusionary) 전략으로도 불리는데 ESG 평가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과거에는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수준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투자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등의 강력하게 의사를 표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적극적인 유형의 지속가능 투자 전략이다.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상대적으로 ESG 성과가 우수한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거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ESG 역량을 기업들과 공유하는 수단으로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ESG 성과에 연동한 자금자원을 통해 기업이 ESG 목표를 달성하고, 공급망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주요 ESG 투자 전략

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특정 ESG 항목에 근거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평가되는 산업 또는 기업을 포트폴리오 펀드의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법
포지티브 스크리닝 (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동종 업종의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산업,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
ESG 통합(ESG integration)	재무 분석 프로세스에 ESG 요소들을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시키는 방법
지속가능 테마 투자 (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지속가능성(청정 에너지, 녹색 기술 또는 지속가능 농업 등)과 관련된 테마 또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Impact/community investing)	사회 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또는 환경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 출처 : GSIA,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② ESG 경영 확산과 금융의 역할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지속가능 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SG 경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내에서의 지속가능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지속가능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데, 먼저 금융회사들의 ESG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 및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및 신시장에 대한 기회 탐색 등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부문의 영향력을 활용해 ESG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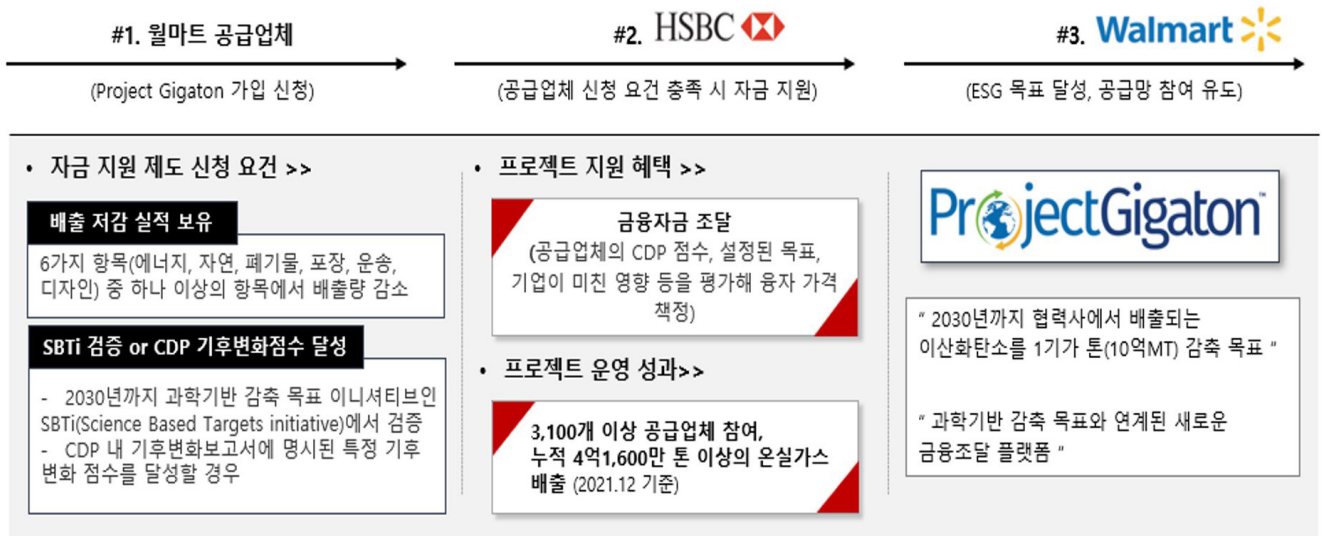
금융회사들이 ESG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SG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가 월마트의 기가톤 프로젝트다. 기가톤 프로젝트는 월마트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기가톤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다. 월마트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에너지, 자연, 폐기물, 포장, 운송, 디자인 등 6가지 항목에서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마트는 HSBC와 공동으로 협력업체의 ESG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CDP(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등 공인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HSBC가 신용한도 및 지급 기한 등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월마트의 기가톤 프로젝트는 금융회사의 투자가 기업의 ESG 수준을 제고하고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SG 역량의 확보는 향후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월마트 기가톤 프로젝트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이번 '금융 산업 ESG 경영전략'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

EU Taxonomy 기후 위임법률 승인



이진 연구원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EU Taxonomy의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한 기후 위임법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 등은 매출 및 투자가 EU Taxonomy에 포함되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EU Taxonomy는 친환경 사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이다. 2020년 발표된 EU Taxonomy 규정은 6가지 환경 목표와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판단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EU Taxonomy 규정의 6개 환경 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한 기후 위임법률을 승인했다. 나머지 4개 환경 목표에 대한 정의는 2022년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법률 승인으로 2022년 1월부터 비재무정보 의무공개 대상 기업들은 전체 매출과 투자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또 2023년부터는 친환경으로 분류된 사업이 EU Taxonomy의 4가지 판단기준까지 만족하는지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기후 위임법률은 운송, 에너지, 제조 등의 산업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 산업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된 사업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사업이다. 다만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운송 수단도 친환경으로 인정된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이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경우 과도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 1월중에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EU Taxonomy 포함 여부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사업이나 투자가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친환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U Taxonomy 규정

환경 목표	판단 기준
① 기후변화 완화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o No Significant Harm, DNSH)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small>*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등</small> ④ 경제활동별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활동 식별 및 개발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SG 가이드라인 특징 및 주요내용



김예나 연구원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들의 핵심지표를 반영하고 있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은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국내외 13개 평가 및 공시 관련 기관의 지표와 측정 항목을 분석하여 핵심·공통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4개 영역, 61개 항목을 통해 기업들이 ESG 경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개 영역, 27개 항목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시 영역에서는 5개 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공시의 형식, 내용 그리고 검증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업들은 ESG 활동과 성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적당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외부기관의 검증 등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 영역의 경우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 용수 및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환경관련 법규 위반 등 17개 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감축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활용에 관한 내용도 점검 대상이다.

사회 영역에서는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지역사회 등을 범주로 하는 2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등을 노동관련 진단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 여성 구성원 비율과 장애인 고용률은 다양성 및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이다. 협력사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배구조 영역의 경우 이사회 구성과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등과 관련한 17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외이사 비율 및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의결권 행사 시스템, 배당정책 등을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 구성

정보공시(5)	환경(17)	사회(22)	지배구조(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시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정보공시 방식 - ESG 정보공시 주기 - ESG 정보공시 범위 · 정보공시 내용 · 정보공시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 온실가스 배출 · 용수 및 에너지 사용 ·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비율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 환경관련 법규 위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규채용, 정규직 비율 등)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산업안전(산업재해율 등) · 인권정책 수립 및 리스크 평가 · 동반성장(협력사 ESG 지원 등) · 지역사회(전략적 사회공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비율 - 이사회 출석률 등 · 주주권리(배당정책 등) · 윤리경영 · 감사기구

※ 자료 : K-ESG 가이드라인

ESG 통계 지표

2021년 12월 3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9	2020	'2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21	31	105	122	122	131	135	144	145
사회적채권	178	471	632	663	689	710	747	765	790
지속가능채권	8	44	124	144	162	178	181	199	216

(2)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019	2020	'2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21	30	113	129	128	139	141	148	148
사회적채권	246	736	1,018	1,079	1,125	1,166	1,214	1,247	1,273
지속가능채권	21	54	120	129	141	153	154	165	175

2. ESG 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 지배구조 평가 결과

(단위 : 개)

	S	A+	A	B+	B	C	D	Total
2020년	-	5	7	17	13	5	-	47
2021년	-	5	11	16	9	5	1	47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3. 기타 통계

RE100* 가입 회원 수

(단위 : 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세계 (한국 포함)	13	37	29	33	40	63	66	65
한국	-	-	-	-	-	-	6	8

* 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7월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주요 환경 정책의 경제성 분석
2월	ESG 정보공개 기준 개정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석유화학	8월	IFRS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주요국의 자연자본 보전 정책
3월	공급망 관리(Due Diligence) 의무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9월	플라스틱 규제 동향 및 과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자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자동차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과 배출권거래제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유통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이경인 선임
T. (02)6050-3132 | E. kyung@korcham.net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한국생산성본부 강은일 팀장
T. (02)724-1886 | E. eikang@kpc.or.kr

EU Taxonomy 기후 위임법률 승인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K-ESG 가이드라인 특징 및 주요내용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ESG 통계 지표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